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.

발 의 자 : 남인순 · 김 윤 · 이수진

김남희 · 백혜련 · 김남근

강선우 · 이병진 · 조계원

정일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업 부진, 학교 생활 부적응,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학생, 학교,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임. 구체적으로는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지원팀 운영, 폭력예방교육 등 공동체 교육 및 선도, 가정방문 등을 통한 학교와 가정의 협력 활동, 지역사회 학생복지 지원협의체 결성·운영 등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학교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,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의 위상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현행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업의 한 전문분야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 신설 등).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지역사회복지”를 “지역사회복지, 학교사회복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학교사회복지”란 학업 부진, 학교생활 부적응, 학교폭력 및 아동 학대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생 문제를 학생, 학교,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·해결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향상 및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<u>지역사회복지</u> 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역사회복지</u> , <u>학교사회복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~ 허. (생략)	가. ~ 허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3. “ <u>학교사회복지</u> ”란 학업 부진, 학교생활 부적응,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생 문제를 학생, 학교,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·해결하여 학생

3. ~ 7. (생략)	<u>의 교육받을 권리 향상 및 전 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회복지 지를 말한다.</u> 4. ~ 8. (현행 제3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	---